

『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04월 0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04월 05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04월 13일

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박 영 일

나. 제안이유

-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으로서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, 자동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 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려고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
 -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·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(안 제2조)

○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

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및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(안 제9조)

○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

-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“150원” 에서 “600원” 으로 정비함(안 제10조제1항제1호)
-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“300원” 에서 “1천600원” 으로 정비함(안 제10조제1항제2호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○ 예산관련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차 병

○ 본 조례안은

- 서민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기한을 연장하고,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에 따라 제출된 조례로 장애인 등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,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자 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납부를 활성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